

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논의 동향

나 상 우*

1. 개요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검토 후 10년이 경과한 2015년 3월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7월 공개자문을 시작하였다.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는 2003년 12월에 시작하여 2005년 9월 결론이 도출되었다. 2005년의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incumbent) 유선사업자인 BT는 액세스 사업부문을 Openreach로 기능적으로 분리(functional separation)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액세스 망을 보유하지 않은 경쟁사업자도 최종 이용자에게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BT의 네트워크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전략적 검토는 통신시장의 구조와 사업모델을 변화시킬 만큼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 (043)531-4212, sangwoona@kisdi.re.kr

1)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란 특정 사업부문을 나머지 사업부문과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특정 사업부문이 매각되지 않고 회사 내의 사업부문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구조분리(structural separation)와 상이(정 훈·나상우(2008), p.4)

Ofcom은 금번 전략적 검토에서 투자와 혁신, 경쟁, 이용자, 규제 등 통신시장과 연관된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하에서는 전략적 검토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본 후, 2015년 7월 발표한 공개자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2.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배경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영국의 통신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 환경 및 규제체계가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시장 환경 측면에서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첫 번째 전략적 검토 당시인 2005년 31%에서 현재 78%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결합상품 이용률은 29%에서 63%로 증가하였다. 또한, 3G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은 가구 기준으로 99%까지 확대되고, 4G의 이용가능성 또한 73%까지 확대되었다.²⁾

한편, 규제 측면에서 BT의 액세스 사업부문이 Openreach로 기능분리되었으며, 2006년에는 경쟁이 활성화된 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매 요금규제를 폐지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이동전화 착신접속료에 상한을 설정하였으며, 2013년에는 4G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였다.³⁾

Ofcom은 지난 10년간 이러한 시장 환경 및 규제체계의 변화가 혁신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선택, 저렴한 요금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는 2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요금은 50% 가까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난다.⁴⁾

Ofcom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성 및 QoS(Quality of Service) 미흡, 신규 서비스에 대한 투자, OTT(over-the-top) 활성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와 사업자간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구

2) Ofcom(2015c), p.5

3) Ofcom(2015a)

4) Ofcom(2015a)

조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가 다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는 기술 및 시장의 발전에 따라 이용자와 기업, 시민을 위해 통신시장이 지속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⁵⁾ Ofcom은 이번 검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에게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Ofcom은 2015년 3월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 발표 시 두 단계에 걸친 검토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Ofcom은 1단계에서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 그룹 등과의 논의를 통해 이슈를 도출하여 자문서를 발간하고, 2단계에서 자문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말 보고서 초안을 공개할 것을 계획하였다.⁶⁾

이에 따라, Ofcom은 2015년 3월부터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사용자 그룹, 학계 전문가 등과 전략적 검토와 연관된 이슈를 논의를 하였으며, 2015년 5월에는 포럼을 개최하고, 2015년 7월 자문서를 발간하였다. Ofcom은 2015년 7월 발간한 자문서에서 현행 규제의 개편을 위한 제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자문서에 대한 의견수렴 후 2015년 말 발간할 보고서 초안에서 규제 개편을 제안할 계획이다. 2015년 7월 개시한 통신시장에 대한 전략적 검토 자문은 2015년 10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3.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전략적 검토의 주요 이슈

Ofcom은 2015년 7월 발간한 자문서에서 통신시장에 대한 검토 이슈를 투자와 혁신, 경쟁, 이용자, 규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2015년 7월의 자문서를 중심으로 전략적 검토의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5) Ofcom(2015c), p.6.

6) Ofcom(2015c), pp.8~9.

(1) 투자 및 경쟁 관련 이슈⁷⁾

Ofcom의 통신시장에 대한 전략의 핵심 목표는 고품질의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
 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Ofcom은 투자 및 경쟁 측면에서의 이슈를 제시하기에 앞
 서 유선 및 이동통신의 이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영
 국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가능성은 <표 1>과 같이 속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대다수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10Mbps 속도의 초고
 속인터넷 커버리지는 가구 기준 92% 수준으로, 아직까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용
 자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영국의 유선 초고속인터넷 속도 및 커버리지

구분	기본적(universal) 브로드밴드	고속(superfast) 브로드밴드	초고속(ultrafast) 브로드밴드
속도	10Mbps	30Mbps	500Mbps
커버리지	가구 기준 92% (‘15. 5월)	가구 기준 95% 중소기업의 82% (‘17년 계획)	BT, Virgin Media, CityFibre 등이 구축 중이거나 계획 중

주: 2Mbps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는 가구 기준 98% 수준(‘15. 5월)

자료: Ofcom(2015), p.4. 요약

<표 2> 영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구분	음성(2G 기준)	데이터	
		3G	4G
커버리지	실외 97%, 실내 83% (‘14. 6월)	실외 84%, 실내 71% (‘14. 6월)	실외 42% (‘15. 5월)

주: 모든 MNO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준

자료: Ofcom(2015), p.4. 요약

7) Ofcom(2015b), pp.3~5 요약

이동통신 서비스 또한 앞의 <표 2>와 같이 서비스별로 커버리지에 편차가 존재하여, 사회적 배제나 디지털 격차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Ofcom은 지금까지 통신서비스의 이용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한 민간의 투자에 의존하되, 상업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한해 개입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이는 신규망의 구축이나 기술 발전을 통한 경쟁이 혁신을 창출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 서비스가 2G에서 3G, 4G로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주파수를 10배가량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동선 기반 유선 초고속인터넷의 속도는 ADSL에서 8Mbps에 불과하였으나 G.fast⁸⁾와 같은 차세대 기술로 500Mbps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Ofcom은 경쟁 활성화가 민간 영역의 효율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민간 영역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경제 성장이나 사회적인 배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 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규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는 이용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 부과, 정부 기금을 통한 지원, 면허조건을 통한 커버리지 확대의무 등의 규제 개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선전화는 BT와 Kingston에게 부과된 보편적서비스 의무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유선 초고속인터넷은 정부의 BDUK(Broadband Delivery UK) 기금 지원을 통해 2016년까지 전체 가구에 2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고, 2017년까지 전체 가구의 95%에 3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데이터 서비스는 4G 면허조건에 따라 2017년 말까지 98%의 실내 커버리지를 구축해야 한다.

Ofcom은 이와 같은 규제 개입을 통해 이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변화하는 시장 및 규제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2009년 설정된 USC(Universal Service Commitment)⁹⁾ 상의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8) G.fast란 기존 망의 업그레이드 없이 구리선 상에서 1Gbps급의 전송 속도를 구현한 기술

9) USC(Universal Service Commitment)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와 상이한 개념

2Mbps¹⁰⁾에서 10Mbps로 상향이 논의¹¹⁾되고, 2015년 5월 정부가 보편적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이얼업(dial-up) 인터넷에서 5Mbps의 초고속인터넷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¹²⁾함에 따라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와 함께 Ofcom은 면허조건 외에 이동통신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 경쟁 관련 이슈¹³⁾

Ofcom은 금번 전략적 검토에서 이용자에게 높은 품질과 적정한 요금,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선 통신시장에서는 접속기반 경쟁(access-based competition)¹⁴⁾의 적절성을, 이동통신시장에서는 설비기반 경쟁(end-to-end competition)¹⁵⁾의 지속 가능성 및 접속기반 경쟁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외 효율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 융합 환경에서의 규제, 품질 보장 등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하에서는 유선 및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관련한 이슈를 상세히 살펴본다.

(1) 유선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먼저, Ofcom은 유선통신시장에서 Openreach의 기능분리에 기초한 현행 접속기반 경쟁 모형이 여전히 적절한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유선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1984년 BT가 민영화된 후 높은 요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매요금규제가 주된 규제 매커니즘으로 적용되었다. 1991년에

10)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2009), p.54.

11) Ofcom(2014), p.19.

12) HM Treasury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2015)

13) Ofcom(2015b), pp.5~12 요약

14) 접속기반 경쟁(access-based competition)이란 도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액세스 망이나 요소를 이용하여 다수의 소매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하는 방식을 의미

15) 설비기반 경쟁(end-to-end competition)이란 직접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간에 경쟁하는 방식을 의미

는 설비기반 경쟁 중심으로 규제를 전환하였으나 영향이 제한적임에 따라 다시 접속기반 경쟁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Ofcom은 2005년의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에서 BT가 시장지배력과 수직 통합된 구조로 인해 경쟁사업자를 차별할 능력과 유인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BT는 자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액세스 사업부문을 Openreach로 기능분리하였다.

현행의 BT 소유구조는 규제를 통해 제한되지만 경쟁사업자를 차별할 유인이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BT와 Openreach의 기능분리 당시 초고속인터넷은 기존 동선기반 액세스 망을 통해 제공되었기 때문에 동선기반 액세스 망의 분리제공을 중심으로 규제가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광기반 초고속인터넷은 네트워크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규제 도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Openreach가 제공하는 도매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Ofcom은 유지보수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Ofcom은 현행의 접속기반 경쟁 모형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Ofcom은 2005년의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에서 BT의 구조분리(structural separation)¹⁶⁾를 대안으로 검토한 바 있다. 당시 Ofcom은 구조분리에 대해 복잡한 작업임과 동시에 구조분리가 이루어져도 규제 필요성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Ofcom은 BT의 구조분리는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궁극적으로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용자 서비스 및 혁신과 경쟁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았다. Ofcom은 금번 전략적 검토에서 현행의 기능분리가 동등접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구조분리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Ofcom은 <표 3>과 같이 4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16) 구조분리(structural separation)란 특정 사업부문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식

〈표 3〉 유선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방안

구분	내 용
기능분리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고 정기적인 경쟁상황 평가나 재정을 통해 연관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경우, 현행의 기능분리를 지속
기능분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의 이행사항이나 새로운 규제의 부과를 통해 연관된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현행의 기능분리 모형을 강화 • 예를 들면, Openreach 사업영역의 조정이나 세밀한 모니터링 및 원가모형의 시행, QoS 향상 유인을 포함한 도매요금 규제나 페널티 부가 등을 적용 가능
구조분리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분리는 BT가 경쟁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며, Openreach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및 QoS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다만, 구조분리는 BT와 산업에 복잡한 규제 개입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구조분리된 상류의 독점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 존재
규제 완화 및 설비기반 경쟁으로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기반 경쟁은 하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병목설비인 액세스망의 QoS를 향상시키지는 못함 • 결국, Openreach의 QoS 향상은 직접적인 설비기반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네트워크의 중복 구축으로 비용의 증가와 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존재

자료: Ofcom(2015), pp.9~10. 요약

(2)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지속

Ofcom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과 관련하여, 최근의 인수·합병 동향을 고려한 설비기반 경쟁의 지속가능성 및 접속기반 경쟁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영국에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은 유선통신시장과는 상이하게 진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이동통신시장에서는 기존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비기반 경쟁을 통해 투자와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1985년 2개의 사업자가 아날로그 서비스 면허를 취득한 후, 1994년 4개 사업자가 2G 면허를 취득하였다. 이후 2000년의 3G 경매에서는 5번째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00년 Orange와 T-Mobile이 합병하여 EE가 됨으로서 4개 사업자가 경쟁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Three의 O2 인

수가 논의 중이어서 사업자 수가 3개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설비기반 경쟁 현황은 <표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 이동통신시장의 설비기반 경쟁 현황

구분	내 용
사업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경쟁을 위한 최적의 사업자 수가 존재하는 경우, 낮은 요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Ofcom은 4G 경매 시 최소 4개의 전국 사업자 존재 필요성을 밝힌바 있음
네트워크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NO간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 비용 절감 및 커버리지 확대가 이루어져 편익을 제공 • 현재 EE와 Three, Vodafone과 O2간 상업적인 협정을 통한 네트워크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음
MV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MVNO가 소매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익을 제공 • 사업자간 상업적인 협상을 통해 도매제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MNO에 대한 MVNO 제공의무 등 도매규제 부과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

자료: Ofcom(2015), p.11. 요약

이러한 설비기반 경쟁은 최근의 이동통신사업자간 합병 논의로 시장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Ofcom은 설비기반 경쟁을 통해 이용자에게 편익이 제공되어 왔으며, 설비기반 경쟁이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접속기반 경쟁은 설비기반 경쟁과 동일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비기반 경쟁이 지속가능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MNVO 제공의무와 같은 도매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3) 이용자 관련 이슈¹⁷⁾

통신서비스는 이용자와 기업의 상이한 수요와 상이한 지불의사에 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측면에서 여타 공익산업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17) Ofcom(2015b), pp.15~16 요약

자신의 니즈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인지하고 실제 실행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비스 선택 시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일부 경우에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유인이 적을 수 있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Ofcom은 Openreach의 도매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매사업자간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전환절차를 검토하였으며, 현재 이동통신사업자간 전환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Ofcom은 결합상품이 약정기간을 고착화하여 사업자간 전환을 어렵게 할 수 있어, Ofcom은 개별상품뿐만 아니라 결합상품의 전환절차와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4) 규제 관련 이슈¹⁸⁾

경쟁정책이나 공공정책, 이용자 보호와 같은 규제는 시장에서 낮은 이용자 성과(consumer outcomes)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시장 환경 변화로 일부 이용자 성과 저해와 관련한 위험이 사라지는 경우, 불필요한 규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fcom은 금번 전략적 검토를 통해 개편이 필요한 규제와 완화나 폐지가 필요한 규제를 식별할 계획이다.

먼저, Ofcom은 차세대 유선 및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존의 레거시(legacy) 망과 서비스의 종료가 예정되어 이와 연관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Ofcom은 레거시 망 및 서비스 종료의 대표적인 예로 PSTN 및 동선 기반 액세스 망의 종료, IP기반 음성서비스 및 all-IP 상호접속으로의 이전, 레거시 전용 회선 서비스의 종료 등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인 BT가 PSTN의 종료를 모색함에 따라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선 기반 액세스 망의 종료 시 화재 및 보안경보와 같은 일부 기능의 제공 가능 여부에

18) Ofcom(2015b), pp.16~18 요약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Ofcom은 향후의 레거시 망 및 서비스의 변화와 기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망 및 서비스로의 이전 과정에서 Ofcom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다음으로, Ofcom은 일반적인 경쟁법이나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통신시장 경쟁 및 이용자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된 사전규제 및 통신 분야에 특화된 규제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다만, Ofcom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경쟁법이나 이용자보호법만으로는 통신시장 경쟁 및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Ofcom은 시장 환경 변화가 규제 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설비기반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우, 접속기반 경쟁을 위한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동일 서비스가 상이한 메커니즘으로 제공되는 융합은 접속기반 경쟁의 규제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이한 수단으로 제공되는 음성서비스 간 대체가 나타나는 경우, 음성에 특화된 액세스 규제를 폐지할 수도 있다. 한편, 접속기반 경쟁은 하류 서비스 시장의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6년의 첫 번째 전략적 검토에 따른 LLU(Local Loop Unbundling)의 도입은 하류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LR(Wholesale Line Rental)의 도입은 하류 음성서비스 시장의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Ofcom은 미사용 광케이블(dark fiber)에 대한 액세스 규제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전용회선 시장의 규제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한편, Ofcom은 런던 일부 지역에서의 전용회선과 같이 특정 지리적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규제를 폐지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4. 결 어

Ofcom은 10년전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를 통해 기존 유선사업자인 BT를 기능분리하였다. 통신시장에 대한 첫 번째 전략적 검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영국의 통신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 환경 및 규제체계가 변화하였다. 또한,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 OTT 활성화 및 사업자간 인수·합병이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통신시장 환경 변화는 현행의 규제체계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15년 3월 Ofcom은 통신시장에 대한 두 번째 검토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 7월 공개자문을 시작하였다. Ofcom은 2015년 10월까지 자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고, 2015년 말에 보고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Ofcom이 언급한 통신시장 환경변화는 영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융합서비스 활성화, 신규서비스에 대한 투자 요구 등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규제체계가 유효한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정 훈·나상우 (2008), “전기통신회계제도와 회계분리”,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1호 통권 44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09). “Digital Britain Final Report”, 2009. 6.
- HM Treasury and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2015). “The digital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strategy”, 2015. 5. 18.
- Ofcom (2015a). “Ofcom announces Strategic Review of Digital Communications”, 2015. 3. 12.
- _____ (2015b). “Strategic Review of Digital Communications: Discussion document”,

2015. 7. 16.

Ofcom (2015c). “Strategic Review of Digital Communications: Terms of Reference”,
2015. 3. 12.

_____ (2014). “Infrastructure Report 2014: Ofcom’s second full analysis of the
UK’s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014. 12. 8.